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97

2024년 9월 11일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 출 일 : 2024년 8월 12일

다. 회 부 일 : 2024년 8월 14일

라. 상 정 일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24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
○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·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  ·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
  ·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  ·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- 추진 필요성
  ·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  ·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위탁 사무 내용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가길 54
- 시설규모 : (대지) 138.49㎡, (연면적) 153.65㎡
- 주요시설 :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 ~ 2027.12.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40백만원('24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336백만원, 운영비 25백만원, 사업비 79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○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(2025.1.~2027.12.)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.

〈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○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
○ 소 재 지 :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24가길 54, 301호
○ 시설규모 : 연면적 153.65㎡
○ 주요시설 : 상담실, 생활실, 학습실, 사무실 등
○ 이용대상 : 가정 밖 남자청소년
○ 위탁사무 내용
  ·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
  ·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
  · 청소년 문제예방사업
  ·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
  · 쉼터의 시설물, 장비 등 유지관리
  ·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
  ·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
  · 기타 '시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. ~ 2027.12.31.)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○ 소요예산 : 440백만원('24년)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○ 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는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, 정원은 10명으로 숙식제공, 의료지원, 여행(체험활동, 친밀감 형성), 법적지원(법적문제 개입 및 해결) 서비스 등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○ 위탁 사무는 쉼터의 관리·운영 및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이고, 대부분 청소년의 상담, 긴급지원, 보호 등 비권력적 사무이며,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보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바, 민간위탁의 대상 및 민간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.

○ 다만, 지도·점검 결과 복무관리 미흡,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연금 반환 처리 미흡, 수정예산 미승인,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관리 미흡, 물품관리 불용처분 절차 미흡 등이 지적되었는 바, 수탁 법인의 투명성과 행정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최근 3년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지도·점검 지적사항 〉

○ 복무관리(출퇴근) 미흡
○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연금 반환처리 미흡
○ 물품검수조서 미작성
○ 2천만원 이상 계약 건 절차 미흡
○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관리 미흡
○ 수정예산 미승인(예수금)
○ 연가보상비 책정 오류로 일부 과다 지급
○ 입소자에 현금 지원 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
○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
○ 정원가산업무추진비(직원 생일선물) 현금 지급
○ 불용물품 소요조회 후 불용품 폐기처분 결과 누락
○ 분무형 소화기 관리 미흡
○ 개인선물 지급 시 수령대장 미작성

〈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민간위탁 수탁현황 〉

○ 2004. 5. 1. ~ 2007. 2. 28. : 신 규 / 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
○ 2007. 3. 1. ~ 2010. 2. 28. : 재위탁 / 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
○ 2010. 3. 1. ~ 2012. 12. 31. : 재위탁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○ 2013. 1. 1. ~ 2014. 12. 31. : 재계약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○ 2015. 1. 1. ~ 2017. 12. 31. : 재위탁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○ 2018. 1. 1. ~ 2019. 12. 31. : 재계약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○ 2020. 1. 1. ~ 2022. 12. 31. : 재위탁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○ 2023. 1. 1. ~ 2024. 12. 31. : 재계약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097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
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(남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○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
○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
○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
○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
○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
○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가길 54

○ 시설규모 : (대지) 138.49㎡, (연면적) 153.65㎡

○ 주요시설 : 숙소, 사무실 등

○ 위치도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440백만원('24년)

- 인건비 336백만원, 운영비 25백만원, 사업비 7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노인 · 장애인 · 여성 · 청소년 ·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(☎ 2133-4131)